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가단120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3.

판 결 선 고 2023. 2.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1.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8. 3. 29. 체결된 1,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4. 6. 체결된

4,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6. 1.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7. 11. 3.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8.4%,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9. 9. 2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잔존원금 12,812,7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C은 2018. 4.경 E과 울산 중구 F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2.부터 2020.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8. 3. 29. 1,000,000원, 2018. 4. 6.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제1임대차의 보증금 명목으로 E(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에게 2018. 3. 30. 1,000,000원, 2018. 4. 6.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제1임대차 만료 무렵인 2020. 3. 19.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2.부터 2022.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2020. 6. 1. 임대인에게 제2임대차의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18. 3.경 이후로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각 사실조회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C이 ① 2018. 3. 29.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행위, ② 2018. 4. 26.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행위, ③ 2020. 6. 1. 임대인에게 제2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행위는 모두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제1, 2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제1, 2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곧바로 임대인에게 제1임대차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C은 제1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결국 피고는 C으로부터 제1, 2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C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제1, 2금전을 송금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2금전의 송금이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금원에 대하여

가) 제2임대차의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C이 2020. 6. 1. 임대인에게 제2임대차의 보증금 명목으로 제3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제3금원을 증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이 있고, C은 제3금원의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C이 제3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의 실제 부담자는 피고였고, 제3금원은 위 20,000,000원 중 일부로서 제2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제3금원은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2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 2금원을 제1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제1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인 2018. 6. 2. C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지급 직후인 2018. 6. 19. 10,000,000원, 2018. 8. 31. 15,000,000원 등이 각 송금되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제1임대차보증금 중 위 15,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6. 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